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ㅇ 사 업 명 :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ㅇ 기　　간 : 2027.1.1.~12.31.
ㅇ 발주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소프트보울
ㅇ 공급물품명 : 웹그리드(SBGrid, 1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1,944,290원,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4일

발주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식회사 소프트보울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ㅇ 사 업 명 :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ㅇ 기　　간 : 2027.1.1.~12.31.
ㅇ 발주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이지서티
ㅇ 공급물품명 : 개인정보점검 솔루션(U Privacy Safer, 209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314,540,551원,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4일

발주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식회사 이지서티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ㅇ 사 업 명 :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ㅇ 기　　간 : 2027.1.1.~12.31.
ㅇ 발주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 보이스아이 주식회사
ㅇ 공급물품명 : VoiceCode V2.0 SDK(보이스아이, 27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104,561,491원,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4일

발주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보이스아이 주식회사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ㅇ 사 업 명 :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ㅇ 기　　간 : 2027.1.1.~12.31.
ㅇ 발주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스패로우
ㅇ 공급물품명 : 소스코드보안SW(Sparrow SAST, 3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6,221,728원,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4일

발주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식회사 스패로우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ㅇ 사 업 명 :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ㅇ 기　　간 : 2027.1.1.~12.31.
ㅇ 발주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에이씨엔에스
ㅇ 공급물품명 : 기록물 검증 솔루션(다큐체크아이 2식), 표준점역(Docu Braille, 4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27,971,854원,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4일

발주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식회사 에이씨엔에스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ㅇ 사 업 명 :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ㅇ 기　　간 : 2027.1.1.~12.31.
ㅇ 발주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파수에이아이
ㅇ 공급물품명 : DRM(파수DRM, 11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83,899,813원,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4일

발주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식회사 파수에이아이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ㅇ 사 업 명 :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ㅇ 기　　간 : 2027.1.1.~12.31.
ㅇ 발주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 토피도(주)
ㅇ 공급물품명 : 연중계 GW(BizFrame MXS Enterprise, 13식), 메시지엔진(Biz Frame Enterprise/partners 2,544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407,788,136원,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4일

발주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토피도(주)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ㅇ 사 업 명 :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ㅇ 기　　간 : 2027.1.1.~12.31.
ㅇ 발주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코넥
ㅇ 공급물품명 : 웹기안기(한컴웹기안기, 234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1,037,525,565원,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4일

발주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식회사 코넥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o 사 업 명 :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o 기　　간 : 2027.1.1.~12.31.
o 발주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o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잉카인터넷
o 공급물품명 : 키보드보안(nProtect Online Security V1.0, 4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5,812,367원,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4일

발주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식회사 잉카인터넷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ㅇ 사 업 명 :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ㅇ 기　　간 : 2027.1.1.~12.31.
ㅇ 발주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 ㈜포시에스
ㅇ 공급물품명 : 리포팅툴(OZ e-Form8.0, 1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3,617,558원,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4일

발주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포시에스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ㅇ 사 업 명 :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ㅇ 기　　간 : 2027.1.1.~12.31.
ㅇ 발주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엑스로그
ㅇ 공급물품명 : 데이터복제솔루션(X-LOG For CDC, 9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15,398,778원,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4일

발주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엑스로그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ㅇ 사 업 명 :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ㅇ 기　　간 : 2027.1.1.~12.31.
ㅇ 발주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 펜타시큐리티(주)
ㅇ 공급물품명 : 데이터 암호화(D.AMO v4.0, 4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16,280,190원,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4일

발주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펜타시큐리티(주)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 기　　간 : 2027.1.1.~12.31.
- 발주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소프트제국
- 공급물품명 : 블록체인(Blockchain Platform, 22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75,594,949원,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4일

발주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식회사 소프트제국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o 사 업 명 :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o 기　　간 : 2027.1.1.~12.31.
o 발주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o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디에스멘토링
o 공급물품명 : Chakan LDAP Suite 3식, Chakan LDAP Sync 3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56,561,172원,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4일

발주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식회사 디에스멘토링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ㅇ 사 업 명 :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ㅇ 기　　간 : 2027.1.1.~12.31.
ㅇ 발주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 ㈜폴라리스오피스
ㅇ 공급물품명 : 웹변환기(폴라리스 converter, 2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21,267,942원,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4일

발주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폴라리스오피스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 기　　간 : 2027.1.1.~12.31.
- 발주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세원아이티(주)
- 공급물품명 : 문서관리 솔루션(Anyone DM v5.0, 2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4,548,107원,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4일

발주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세원아이티(주)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ㅇ 사 업 명 :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ㅇ 기　　간 : 2027.1.1.~12.31.
ㅇ 발주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지란지교소프트
ㅇ 공급물품명 : 개인정보보호솔루션(개인정보보호필터, 179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411,645,920원,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4일

발주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지란지교소프트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ㅇ 사 업 명 :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ㅇ 기　　간 : 2027.1.1.~12.31.
ㅇ 발주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아이더블유네트웍스
ㅇ 공급물품명 : 메일솔루션(I-MAILER, 2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3,499,721원,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4일

발주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식회사 아이더블유네트웍스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 기　　간 : 2027.1.1.~12.31.
- 발주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아이엔씨솔루션
- 공급물품명 : DRM(Document Security, 1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1,633,223원,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4일

발주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아이엔씨솔루션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 기　　간 : 2027.1.1.~12.31.
- 발주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컴트루테크놀로지
- 공급물품명 : 개인정보보호솔루션(개인정보보호솔루션, 4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7,515,656원,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4일

발주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컴트루테크놀로지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ㅇ 사 업 명 :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ㅇ 기　　간 : 2027.1.1.~12.31.
ㅇ 발주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제니퍼소프트
ㅇ 공급물품명 : 모니터링 솔루션(제니퍼APM, 141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52,786,352원,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4일

발주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제니퍼소프트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ㅇ 사 업 명 :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ㅇ 기　　간 : 2027.1.1.~12.31.
ㅇ 발주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오케스트로
ㅇ 공급물품명 : 가상화SW(CONTRABASS, 269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258,371,911원,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4일

발주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오케스트로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ㅇ 사 업 명 :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ㅇ 기　　간 : 2027.1.1.~12.31.
ㅇ 발주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 ㈜큐브리드
ㅇ 공급물품명 : DBMS(Cubrid 387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온나라 문서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2,633,573,081원,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4일

발주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큐브리드　(인)